2021년도 제3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12. 9.(목),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5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377건(안건번호 제2021-173029호~17540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73029호~173042호는 ◎◎◎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3043호~173047호는 다음 블로그 및 웹하드에서 최신 웹소설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3048호~173072호는 ◎◎◎ 블로그, 카페 및 판도라TV에서 영상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8호는 ◎◎◎ 블로그, 카페에서 영상 저작물의 일부를 제공한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5호는 편집에 창작성이 보이지 않는 점, 원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이용한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1-173086호~173088호는 특정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원저작물의 일부를 편집하여 이용한 것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합법 시장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3089호는 오디오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판매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제공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3190호~173108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 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1-173108호는 이미 삭제되어 삭제 및 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3109호~17540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99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338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18651호~18988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개에 접속할 수 없는 66개의 URL 정보는 부결하고, 4개에 접속할 수 있는 272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68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5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C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512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 제2021-173029호~175405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73029호~173047호는 민원인들(실명 4명)이 신고 및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 소설을 ㅇㅇㅇ, ~~다음~~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거짓말쟁이 영애는 소꿉친구를 독점하고 싶어~~!' 등 21건을 각각 3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ㅇㅇㅇ 블로그에 만화 '~~집사들의 침묵~~' 5건이 게시되어 있음. 총 26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1-173031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1화~5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1-173029호~17304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73029호~173047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73048호~173072호은 민원인(실명 2명)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판도라티비~~, ㅎㅎㅎ 카페 및 블로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판도라티비~~, ㅎㅎㅎ 카페 및 블로그에서 영상 '~~버스타즈~~' 등 25건을 공중에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39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1-17306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영상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1-173048호~17307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73048호~173072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8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 카페 및 블로그에서 영상저작물 일부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카페 및 블로그에서 방송 '나 루토' 등 16건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35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영상저작물 일부를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중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5호는 편집에 창작성이 보이지 않는 점, 원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이용한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으며 안건번호 제2021-173086호~173088호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합법 시장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1-173087호 마지막 장면은 파노라마로 보이는데,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것인지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추후 유사사례 심의시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드리겠음.

- A 위원: 해당 부분이 상당히 길게 보여지고 있는데, 게시자의 창작성이 개재된 부분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질문한 것임.

- C 위원: 게시자가 직접 만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편집과 창작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5호는 원작을 별도의 창작성 없이 길이만을 편집한 것이고 안건번호 제2021-173086호

는 게시자의 특정한 의도하에 편집하였다고 보고되었음. 그런데 안건번호 제2021-173087호도 원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잘라붙인 것이라면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5호와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지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음.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1-173086호~제2021-173087호는 모두 '매드무비'로 검토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1-173087호는 정확히 말하자면 매드무비는 아니지만, 지난 2021-363회 전체위원회에서 부결로 심의했던 안건과 유사하게 원저작물에서 특정한 부분을 골라내서 편집한 영상임.

- C 위원: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5호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안건 중 하나를 들어 설명드리면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는 원저작물의 다섯 편 분량을 5분의 1 정도로 줄이기는 하였지만, 해당 회차의 핵심 내용인 액션 장면을 다른 편집 없이 모아 붙이기만 하여 제공하고 있음. 흔히 말하는 몰아보기 영상과 유사한 형태임.

- C 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의 '매드무비' 설명 주석을 보면, '영상을 단순히 잘라내 붙인 것부터 원저작물의 내용에 완전히 반하는 것까지 다양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설명에 따르면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5호는 매드무비 중 '원저작물을 단순히 잘라내

붙인 것’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매드무비’는 일반적으로 뮤직비디오와 유사한 특정한 편집 형태를 칭함. 줄거리를 보기 위해서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음악을 더해 편집한 것임.

- C 위원: 그러니까 각주에 의하면 ’영상, 그림 등을 합성하여 기존과 다른 영상물로 제작’ 이것이 매드무비의 핵심 정의로 보임.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설명에 ‘서로 무관한 부분 또는 원저작물들을 함께 이용하는 것’ 외에도 ‘영상을 단순히 잘라내여 붙인 것’이 있다면, 앞선 단순 잘라내기 영상과 매드무비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아짐.

- 강나래 전문위원: ‘매드무비’의 설명 중 ‘단순히 잘라내어 붙인 것’은 편집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임.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의 경우 해당 회차 중 핵심이 되는 장면을 몰아볼 수 있도록 잘라서 모아놓은 것이고, 매드무비는 별도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안건번호 제2021-173086, 173087호와 같이 원작과 다른 등장인물들의 서사를 별도로 구성하는데, ‘매드무비’ 설명 중 ‘단순히 잘라 붙인 것’은 이렇듯 나름의 주제 의식은 있지만 편집의 질적 수준이 그냥 잘라내서 짜깁기한 정도라는 의미임.

- C 위원: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주제의 컨셉에 맞게 단순히 잘라서 붙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음. 이에 비해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5호처럼 단순히 내용을 압축하여 보기 위해 편집한 것은 매드무비라 하기에 어렵다고 할 것임.

- E 위원: 매드무비와 이른바 패스트무비를 가르는 제작자의 의도 등 기준은 추상적인 것임. 분량 측면에서도 구분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는 다섯 화 중 일부를 편집한 것인데 이에 비해 안건번호 제2021-173086호는 이보다 훨씬 많은 회차의 일부를 이용하였으므로 매드무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A 위원: 클리어컷이 어디에 그어지냐는 어려운 문제임. 미술에서의 콜라주 기법과 같이 해당 소재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작품을 만들어 내는 정도가 된다면 의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그리고 안건번호 제2021-173088호의 경우에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과 비교해 합법시장 대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1-173088호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46초 이용 음원의 경우, 4분 3초짜리 음원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 C 위원: 오프닝, 엔딩곡을 따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전체 분량의 음원을 판매하고 있음.

- C 위원: 그렇다면 합법시장의 대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만 볼 수는 없음. 영상에서 46초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님. 일반적인 광고가 15초, 길어야 1분인 것을 고려하면 46초 안에 원저작물을 녹여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원저작물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기

는 어려움.

- 강나래 전문위원: ‘매드무비’나 지금 보시는 ‘랭킹 영상’과 같은 것들은 원저작물을 가지고 노는 애니메이션 마니아층의 문화를 양해할 수 있다는 배려의 반영임. 일본의 경우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 제작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권리자들은 위와 같은 창작과 편집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묵인하고 있음. 단순복제물이 아닌 이러한 경우에 대해 심의위원회와 보호원이 일괄적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권리자의 대응에 맡기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임.

- E 위원: 제2021-173088호의 경우 영상과 음악이 모두 원저작물인데, 두 원저작물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지 각각 검토해야 할 것임. 만일 영상에 문제가 없는데 음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상저작물에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정권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를 해봐야 함. 일부는 적법하고 일부는 불법하다고 하였을 때 전체가 모두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이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시정권고는 어려울 것임.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1-173086호는 파노라마 부분이 게시자의 편집이 개재된 것인지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창작성 부분의 판단이 어려움.

- 강나래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1-173086호 영상 중간에는 화면과 인물 사진, 명대사를 합성한 장면이 있는데, 해당 장면은 원저작물에 없으며 게시자가 편집한 것임.

- C 위원: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파노라마도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음.

- A 위원: 창작성 문제를 떠나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영상임.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1-173088호의 원곡은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4분 3초의 원곡은 현재 판매중이나, 영상저작물에 사용된 길이를 따로 판매하거나 오프닝 화면을 따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음.

- A 위원: 음원이 판매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전체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과 비슷한 것은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건은 음원의 일부가 아닌 전체 음원을 .mp3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게시하였던 사안임.

- C 위원: 본건은 전체위원회 건과 달리 음악 자체를 다운로드할 수 있지는 않음.

- 오진해 전문위원: 한편 저희 4분과에서 심의했던 사안 중 심의대상 게시물에 편집영상 4개가 게시된 사안이 있었는데, 당시 4개의 영상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매회 동일하게 제공되는 오프닝 영상의 경우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해주셨

음.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1-173088호에는 19편의 오프닝 혹은 엔딩이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 말씀하신 4분 3초짜리 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해당 음원은 원저작물에서 4분 3초 중 1분 31초가 사용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영상 중 다시 46초를 사용하였음.

- C 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2분의 1을 이용하고 있음. 다만 오프닝 자체는 시장에 따로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라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8호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E 위원: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5호는 원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였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이며 제2021-173076호~173088호는 합법시장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결 의견임.

-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8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1-173076호~173088호는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73089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건임. 인터넷 사이트에서 오디오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직접링크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이라는 사이트에서 출판 '○○○○○○○○○○○○○○' 1건 등 다수의 오디오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직접 링크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총 1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1-17308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오디오북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오디오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제공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1-17308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오디오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현재 살아 있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지금은 잠시 게시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게시글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조만간 다시 살아날 것이 확정적으로 보임.

- A 위원: 링크가 지금은 작동하지 않지만, 저작권 침해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상태는 그대로인 것으로 보임.

- C 위원: 먼저 ■■에서 해당 오디오북을 저작권 처리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 오디오북을 ㅇㅇㅇㅇㅇ이라는 사이트에 다시 올려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ㅇㅇㅇㅇㅇ은 해외 사이트 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ㅇㅇㅇㅇㅇ은 국내 사이트이고 직접링크의 원천사이트가 해외 사이트임.

- A 위원: 링크가 다 개별화되어 있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채증자료를 보시면 왼쪽 하단에서 8개의 링크 중 7번으로 표기된 오디오북 전체 파일을 다운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iso파일 안에 오디오북의 장르별로 폴더 분류가 되어 있고, 그중 한 폴더에 심의요청 대표저작물이 .mp3 형태로 들어

있음.

- C 위원: 그리고 제공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현재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직접링크 자체는 바뀔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을 보시면 '★★★★★★★★★★★★★★★★'고 하고 있는데, 실제 기존 링크 만료 후 12. 1.자로 링크를 수정하여 다시 올렸고, 그 링크가 12. 8.자로 다시 만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C 위원: 우리가 시정권고를 해서 삭제·전송중단을 하면 링크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 C 위원: 구글 검색결과 삭제와 비슷함. 계속 뒤쫓아 가는 꼴임.

- A 위원: 이 전체 페이지가 사라진다면 새 게시물을 만들지 않는 이상 침해예방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임.

- C 위원: 지금 해당 링크는 작동이 되지 않는데, 지금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해도 다시 링크를 만드는 것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있는 경우 원천게시물에는 시정권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링크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같은 원천게시물에 대해 새로운 링크게시물이 만들어지는 것까

지는 막을 수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제2021-173089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73089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73090호~17310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ㅎㅎㅎ,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사안임. 총 29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1-17309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판매 페이지 내 스트리밍 기기에 대한 설명, 가격 등이 게시되어 있음.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안건번호 제2021-173108호는 이미 삭제되어 삭제 및 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1-173090호~17310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스트리밍 기기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인가? 만일 다른 용도로도 이용된다면, 단지 이 기기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기기는 보호원이 주기적으로 판매글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건임. 지적하신 대로 기기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방송 신호를 잡는 기기에 불과하나, 직접 보셨듯이 상품의 대표 이미지 등으로 불법복제물 이용을 명확하게 광고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기기에 불법 앱을 설치하여 무료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기기가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에만 이용된다고 판단하고, 판매글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 A 위원: E 위원님 말씀은 해당 기기가 만약 범용기기라면 불법목적뿐 아니라 적법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규제는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2021-173090호~173108호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함.

- E 위원: 원안대로 안건번호 2021-173090호~173107호는 가결 하고 다만 이미 삭제된 안건번호 2021-173108호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마땅함.

-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2021-173090호~173108호는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건번호 2021-173108호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1-173109호~17540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영화)라스트 나잇 인 소호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73902호는 웹하드에서 '(영화)라스트 나잇 인 소호 (2021)'을 22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1.

12. 1. 개봉한 해외 해외 영화로 현재 박스오피스 6위임.
(방송 (방송)지옥(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75371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방송 (방송)지옥(2021)’을 23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1. 11. 19. 공개한 해외 드라마로 넷플릭스에서 독점 서비스 중.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73109호~17540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건번호 제2021-173109호~17540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73109호~17540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1-제2021-173108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건번호

제2021-173086호~173088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173029호~173042호, 제2021-173043호~173047호, 제2021-173048호~173072호, 안건번호 제2021-173073호~173085호, 제2021-173089호, 제2021-173090호~173107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1-173109호~17540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24쪽부터 2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8651호~18988호 중 안건번호 제2021-18651호~18716호는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3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15.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